

#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1995. 5. 16. 제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1995. 5. 17.

다. 상정일자 : 1995. 5. 25.(제6회임시회 개발위원회 제1차회의)

## 2. 제안설명

### 가. 제안이유

- 보건(지)소에서 충치예방을 위해 열구전색 진료비 산정근거 시달에 따라 진료비를 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치아우식증(충치)예방진료에 따른 열구전색 진료비를 정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치아의 교합면(씹는면)에 있는 열구(깊이패인 홈)를 치과 재료로 메워줌으로써 충치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치면 열구전색 장비를 지원받거나 동 장비를 자체 부담 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이에대한 진료수가를 보건소법 제8조 제2항에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

동 진료가 비 보험급여 대상 이지만 보건(지)소를 통한 예방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보험 요양 급여 기준및 진료 수가 기준에 의거 보건(지)소 초과 1회 방문당 수가 총 진료비로 한것은 전국 시.군이 동일한 것으로 감안 할 때 적법하다고 사료됨

#### 4. 질의답변 요지

##### 가. 질의요지

- 열구전색기구란 어떠한 기구이며 1인당 치료비는 얼마인가(박종태위원)
-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범 국민적 사업으로 치료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진료해 줄 용의는?(윤장택의원)

##### 나. 답변요지

- 열구 전색 기구란 충치 치료기구가 아니고 충치 예방 치료 기구임.  
그리고 1인당 치료비는 보험대상이 아니며 2,750원이며 매년 년초에 보사부장관이 진료비를 고시함.
- 무료로 치료해 주면 좋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재료비의 실비만 받고있는 실정에 있음.

#### 5. 심사결과

원안가결

#### 6. 심사보고서 유첨서류

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1부 끝.